

〈同〉 消防施設의 非常電源으로 使用하는 蓄電池設備의 構造 및 性能과 設置基準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答〉 蓄電池設備는 非常電源의 一種으로서 停電時에 消防施設을 有効하게 作動시키는 것으로 蓄電池, 充電裝置, 配線用遮斷器, 電流計, 電壓計等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 構造 및 性能과 設置基準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 構造 및 性能

#### 가. 一般事項

蓄電池設備는 自動的으로 充電되는 것으로서 充電電源電壓이 定格電壓의 ±10% 범위내에서 變動하여도 機能에 異常을 일으키지 않고 充電할 수 있는 것으로서 0°C~40°C 범위의 周圍溫度에 대해서도 機能에 異常이 없는 것을 設置해야 합니다.

또한 蓄電池設備에는 過充電防止裝置, 均等充電裝置와 出力電壓과 出力電流를 監視할 수 있는 電壓計 및 電流計를 設置해야 합니다.

#### 나. 蓄電池

蓄電池는 自動車用以外의 鉛蓄電池나 알카리蓄電池를 使用해야 하며 單電池(Cell)當 公稱電壓은 鉛蓄電池는 2V, 알카리蓄電池는 1.2V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密閉型을 제외한 蓄電池에는 減液警報裝置를 설치해야 하며 液面을 용이하게 確認할 수 있

는 構造로서 酸 또는 알카리蒸氣가 發生할 우려가 있는 것은 防止措置를 해야 합니다.

蓄電池의 容量은 公稱電壓의 80%가 될때까지 放電한 후 24時間 充電하여 그후 充電하지 않고도 1時間 以上 감시상태를 계속한 직후에 消防設備別로 다음에서 정한 時間 以上 放電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소화설비 : 20分

경보설비 : 10分

피난설비(유도등) : 20分

소화활동상 필요한설비, 배

며 充電容量은 주위온도 10~40°C의 범위에서 蓄電池의 公稱電壓 80%까지 放電한 후 바로 24時間 充電한 경우에 蓄電池容量이 소정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회복 가능하여야 합니다.

### 2. 設置基準

#### 가. 設置場所

蓄電池設備는 直射日光이 비치지 않고 周圍溫度가 40°C를 넘지 않으며 溫度變化가 심하지 않은 곳으로서 有害ガス나 먼지의 發生 또는 채류할 우려가 없는 場所에 설치해야 합니다.

#### 나. 保有距離

蓄電池設備는 火災豫防上 및 保守, 點檢上 필요한 거리를 보유해야 하는데 充電裝置는 操作面에서 1.0m, 點檢面에서 0.6m, 換氣口設置面에서 2.0m 이상 이격시키고 蓄電池는 點檢面에서 0.6m, 축전지相互間 0.6m, 기타 0.1m 이상 이격시켜야 합니다.

#### 다. 換氣

蓄電池는 통상의 使用狀態에서 爆發性gas(水素가스)를 發生하므로 集積되면 危險하기 때문에 自然換氣가 充分할 경우를 제외하고

換氣量( $m^3/hr$ ) = 5.5Cell수 × 公稱容量(AH) ×  $\frac{1}{1,000}$ 의 以上을 換氣할 수 있는 施設을 하여야 합니다. \*

全 弘 宰

〈本協會防災研究部·代理〉

## 相談코너

### 安全點檢

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및 비상콘센트설비 : 20分

무선통신보조설비 : 30分

#### 다. 充電裝置

充電裝置는 絶緣變壓器, 실리콘 整流體 等으로 構成된 것으로서 싸이리스터 等에 의한 制御裝置 또는 交流定電壓裝置를 附設해야 하며 入力側에는 過電流遮斷器와 開閉器를 設置해야 합니다.

또한 自動的으로 充電되는 것으로서 充電完了후에는 Trickle充電 또는 浮動充電方式으로 自動的으로 切換이 되어야 하

問：殘存物의 除去費用은 火災保險에서 補償받을 수 있음니까？ 또한 이에 대한 所有權은 누가 갖는지요？

答：殘存物의 所有者는 通常被保保險者이며, 殘存物의 除去費用은 保險에서 補償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說明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 1. 殘存物의 除去費用에 대한 保險의 責任

建物이 全燒되어 保險會社가 그 損害에 대하여 補償하였어도 被保險者は 殘存物의 除去費用, 즉 建物이 타나남은 残木, 残土, 그밖의 타나남은 商品等을 燃却場에 運搬하여 燃却處分하지 않으면 안되는 費用等 여러가지 殘存物을 除去하는데 要하는 費用의 損害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殘存物의 除去費用은 保險의 目的인 商品自體의 物의 損害가 아니고 間接的으로 發生한 費用의 損害임으로 火災保險에서는 補償되지 않는 것입니다. 保險會社가 補償하는 것은 保險의 目的에 發生한 損害에 限定되어 있으며 殘存物의 除去費用은 被保險者の 側의 負擔이 되는 것입니다.

### 2. 殘存物의 所有權

商法 第681條는 「保險의 目的의 全部가 滅失한 境遇에 保險金額의 全部를 支給한 保險

者는 그 目的에 대한 被保險者の 權利를 取得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으나 殘存物에 對한 所有權이 保險金의 支給과 함께 法律上 當然히 保險會社에 移轉하게 되면 殘存物이 第3者에게 損害을 끼쳐 賠償義務를 負擔하지 않으면 안된다든지, 殘存物 處分에 必要한 費用이 殘存物 買上代金을 超過한다든지 하여 保險會社가 意外의 負擔을 가져오는 境遇가 있으므로 火災保險 普通約款 第17條는 「會社가 殘存物을 引受하지

는 殘存物을 取得할 權利가 있게 된다. 이는 商法 第681條의 保險 代位 規定의 適用을 받는 것이다.

殘存物의 取得은 即,

- ① Principle of Indemnity
  - ② Theory of Indemnity
  - ③ Salvage Principle
  - ④ Principle of Subrogation
- 에 따른 補償原則에相當한 比重을 두고 있다.

一般保險에 있어서 保險會社의 殘存物 取得比率은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對한 比率에 依하여 配分取得할 수 있는 바 殘存物 取得에 관해 必要했던 費用은 保險會社가 支出하여야 한다. 그러나 取得에 關係없는 費用은 保險會社가 負擔하지 아니한다.

殘存物上의 權利取得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한 原則에 따르겠지만 要는 그 殘存物의 價額이 全損害價額에 對한 比重 또는 殘存物의 利用度에 따라 保險會社는 이를 取得할 것인지의 여부를 決定한다.

原則으로는 保險會社에 歸屬되는 權利이지만 僅少價額의 殘存物, 利用度, 稀薄한 殘存物, 整理費用相當의 價額物, 或은 其他事情等을 考慮하여 이를 抛棄할 때는 그 殘存物上의 權利는 被保險者에 歸屬합니다. \*

## 相談 코너

### 火災保險

아니 할 뜻을 나타내고 損害를 補償한 境遇에는 그 殘存物은 被保險者の 所有가 됩니다」라고 規定하여 商法의 規定을 變更하고 있습니다. 保險會社는 이러한 規定에 의하여 殘存物을 引受하지 않고 處理하는 것이 通例이므로 通常 殘存物의 所有權은 被保險者에게 歸屬됩니다.

### 3. 保險代位規定

保險會社는 保險의 目的에 全燒하여 保險의 目的에 對한 保險金額 全額이 支給된 때에

車 塚 鐵

〈本協會 業務部·代理〉